

동승아트센터 대관 규정

동승아트센터 (2016 년 1 월 19 일자 개정)

제 1 조 [대관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동승아트센터(이하 "동승"이라 함)의 기본 시설인 동승홀과 동승소극장, 꼭두소극장의 부대시설의 대여 및 무대기술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대관의 정의]

- 1)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행사' 등을 위하여 공연장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과 이와 관련된 부수행위를 위하여 공연장의 시설 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동승의 대관 승인을 받아 동승과 계약에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 3) 동승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 유지, 입장 통제, 안전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 1)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공연 목적 이외의 방송, 영화, CF 촬영을 위한 기타 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준비 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 등으로 구분한다.

- 2) 정기대관은 각 반기 별 기준으로(상반기: 3 월~8 월, 하반기: 9 월~2 월) 동승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을 받아 심사, 승인, 확정한다.
- 3)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의 잔여일정 발생 시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간은 정하지 않고 동승 임의의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심사, 승인, 확정한다.

제 4 조 [대관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동승 공연장 및 기타 부속 공간의 기본 시설 및 부대설비에 해당한다.

제 5 조 [대관료]

- 1)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시설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동승에서 규정해 부과한다.
- 2) 가. 정기대관: 대관계약 체결 시 대관 자는 기본 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연시작 60 일 전에 30%, 공연 시작 15 일 전에 나머지 잔금 20%를 완납하여야 한다.
나. 수시대관: 대관계약 체결 시 기본 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일주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 기타대관: 계약체결과 함께 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3) 부대설비 사용료는 공연진행 스텝회의 후 동승에서 정하는 기한에 납부 하여야 하며, 최소한 공연 3 일전까지는 납입을 완료 하여야 한다. 부대설비의 추가 신청은 동승의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되는 부대설비 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3 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 4) 대관일정 변경 및 연장공연 등에 따른 변경 또는 추가되는 대관료는 동승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해당공연 일주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5) 동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이나 재단이 후원하는 공연 또는 기획대관의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 방식은 별도의 협의에 따른다.
- 6)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승 측과 대관자의 충분한 협의 하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나.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관자가 사용일로부터 100 일 전 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동승의 승인을 얻을 경우.
- 7) 동승은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 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 8) 대관자가 부대설비 사용료 및 추가 대관료 등을 미납했을 경우 동승은 입장권 판매 대행금액에서 우선 공제하여 대관자의 대관 사용료 납부와 같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권 판매 대행 금액 정산 시 대관사용료 해당 금액 공제 후 지급한다.

제 6 조 [대관 신청의 접수]

- 1) 대관 공고는 동승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 2) 공연 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와 공연 작품 개요 (행사의 경우 행사 계획서)등을 동승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빙자료를 동승에 제출 하여야 한다.

- 3) 대관 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설비 사용 신청서를 공연 시작 15 일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제 7 조 [대관 심의 및 승인]

- 1) 대관 심의는 동승의 대관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심사된다.
- 2) 동승은 대관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대관 승인 또는 대관 불가 통지서를 유선(홈페이지 공개, 전화, fax, e-mail 등)으로 통보한다.
- 3)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4) 대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대관 자')는 대관 승인 통지서에 명시된 일정 내에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8 조 [대관 승인 기준]

- 1) 대관 승인 기준은 대관자의 전년도 공연실적 및 신청내용과 차기 년도 동승 운영 방침을 고려하여 정한다.
- 2) 대관 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실험적인 공연
 - 나. 창작 초연 공연 작 단체
 - 다. 해외 우수단체 초청공연
 - 라. 실적 및 성실성이 우수한 단체 - 신청일 기준 최근 공연실적 우선

제 9 조 [대관 신청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대관 신청을 받지 않는다.

- 1) 현행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공연이나 행사
- 2) 동승의 시설 및 설비, 또는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 3) 동승의 대관 승인 이후 대관 자 임의로 대관계약을 취소한 전력이 있는 경우
- 4) 동승에서 과거 공연 시 대관 계약대로 시행을 안 지킨 전력이 있는 경우

제 10 조 [대관 승인 취소 및 사용중지]

공연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 대관 승인 이후 대관 규정 제 6 조의 대관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2) 대관 승인 이후 대관 규정 제 9 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밝혀졌을 때
- 3)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 4) 규정에 따른 기일 내에 대관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 5) 대관자가 동승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련 시설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한 사실이 밝혀 졌을 경우

제 11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도금지]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이로 인해 얻게 된 동승의 관련 시설 이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 승인 또는 계약 체결 후, 공동 주최 및 초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승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 12 조 [사용내용 변경 금지]



- 1) 대관 자는 모든 공연 내용은 승인 받은 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출, 배우 또는 디자이너 등의 변경 또한 반드시 동승과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 2) 대관자가 동승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된 내용으로 공연하여 동승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대관 자는 즉각 그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동승은 즉시 대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미리 납부한 대관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제 13 조 [대관일정 변경 불가]

대관 자 측의 사정에 의한 대관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자가 사용일 100 일 전에 일정 변경을 신청하여 동승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액(계약금 포함)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4 조 [관리 의무 및 손해 배상]

- 1) 대관 자는 대관기간 중 동승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승 내부의 모든 공간 (분장실 및 화장실 포함)에서는 금연을 하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진다.
- 2) 대관자가 '1 항'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 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3) 대관 자는 대관 관련 시설(무대, 음향 및 조명 기기)과 부속 시설 (열쇠, 분장실 집기, 비품) 파손 시 동승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4) 대관 자는 대관 기간 중 (공연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다만 동승 측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 5) 대관 자는 동승이 어떠한 제 3 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동승 측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르는 모든 법률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 15 조 [장치의 설치 및 철거]

- 1) 대관 자는 동승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동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필요한 경우 극장 측은 대관자에게 소정의 예치금 부과 및 관리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치금액- 동승홀: 500,000 원, 소극장: 300,000 원)
- 2) 대관자가 반입하는 관련 설치 물들은 현행 소방 법에 규정된 방염처리가 완결된 시설물이어야 한다. (대관 확정 후, 필히 방염 서류 제출.)
- 3) 대관 자는 사용한 설치 물들을 사용 완료 즉시 원상복구 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 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동승이 철거 또는 폐기 한다. 단, 철거 시에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동승이 어떠한 변상도 하지 않는다.

제 16 조 [입장권 발행]

- 1) 입장권의 발행은 동승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 때 좌석 구분표, 가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대관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에 다음의 사항은 입장권에 명시해야 한다.
 - 가. 어린이 입장은 입장권을 소지한 초등학교 이상의 어린이에 한 합니다.
(단, 공연의 특성에 따라 연령 제한은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한연령을 기재한다.)
 - 나. 공연 시작 10 분전까지 입장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연 중에는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 다. 음식물, 꽃다발, 애완동물을 가지고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라. 휴대전화와 호출기의 전원을 반드시 꺼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공연장 안에서는 사진 촬영 및 캠코더 녹화, 녹음 등 공연의 저작권에 침해될 수 있는 모든 행위 및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바. 모든 인쇄물에 사용되는 동승아트센터 로고, 약도는 동승에서 대관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동승은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 3) 동승은 제 1,2 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지 않은 입장권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 4) 동승은 대관 자와 협의하여 동승 측의 회원에게는 입장권 금액을 일정 비율로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대관단체는 동승 측과 합의하에 대관공연의 일정수량의 초대권을 제공한다.
- 5) 동승은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일부 좌석을 유보하며 그 수량은 다음과 같다.
 - 가. 동승 홀: 총 4 매 (객석 1 층, 나 구역 6 열 1 ~4 번)
 - 나. 동승 소극장: 총 2 매 (5 열 9 ~10 번)
 - 다. 꼭두 소극장: 총 2 매 (4 열 10~11 번)

제 17 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 1) 대관 자는 공연의 광고 및 홍보에 있어 동승과 관련된 사항은 동승의 내부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 현수막 부착, 포스터 게시, 전단 배치, 물품 진열, 판매대 설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승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승의 판단으로 불허할 수도 있다.

제 18 조 [방송 및 판촉 관련]

- 1) 동승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음, 녹화 또는 방송을 할 때는 동승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기술 사항 등에 관해서는 공연장 측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동승은 필요좌석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승은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 2) 공연과 관련된 리셉션 및 판촉 관련 행사(사인 회)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동승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대관 자는 동승과의 협의를 거쳐 공연 내용 및 공연 명을 이용한 별도의 관련 부가상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다.

제 19 조 [서식]

대관에 관한 모든 서류는 동승아트센터의 소정 양식으로 한다.

제 20 조 [공연진행의 정의]

'공연 진행'이라 함은 공연준비 기간을 포함한 공연 대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 사항을 말한다.

제 21 조 [공연 진행 협조]

- 1) 공연 당일의 진행은 공연 시작 1 시간 전부터 공연종료까지이다.
- 2) 대관 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연 셋업 시작 최소 3 주 전에 동승 측이 주최하는 스텝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스텝회의에는 대관단체 및 동승의 담당 스텝이 필히 참석하여 공연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3) 무대 작업 및 공연 진행의 책임은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객석, 로비,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은 하우스 매니저에게 있다.
- 4) 효율적인 공연 진행을 위해 대관 자는 하우스 매니저와 무대감독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5) 대관시간은 공연시작 3 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이며 대관단체는 분장실 및 공연장의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분장실은 사용인이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승은 사용인의 분실 및 도난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6) 공연 진행 기간 중에 극장 및 관련 부속시설(분장실, 로비)에 음식물 반입은 불허한다. (단, 동승 측과 협의된 사항은 인정할 수 있다.)
- 7) 대관 자는 공연 시작 전까지 대본 및 악보 3 부, 프로그램 20 부, 입장권, 포스터 등 동승 측이 보관용으로 필요한 각종 인쇄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연종료일까지 공연녹화 테이프 2 개를 동승에 제출하여야 한다.
- 8) 대관 자는 공연 기간 중에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연장 출입구 및 백 스테이지 출입을 불허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대관 자는 출입증 패용 명단을 공연 시작 일주일 전에 동승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 9) 동승은 공연장 대관자의 진행 편의를 위하여 진행 팀에 공연 준비와 철수 기간 동안 일정 수의 무료 주차를 제공하고 공연 기간 내에는 동승 홀: 무료 3 대 동승소극장과 꼭두 소극장 무료:2 대를 제공한다.

제 22 조 [규정의 효력 및 적용시기]

- 1) 본 규정은 동승아트센터와 대관 자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2) 본 규정은 2016 년 1 월 이후 공연을 위한 대관 계약부터 적용되며, 매년 공연장의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23 조 [항변권]

- 1) 동승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관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항변할 수 있다.
- 2) 항변에 따른 귀책 사유가 개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승은 그에 따른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 24 조 [규정 변경 승인]

- 1)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더 필요한 사항이 요구될 경우 동승아트센터 측 대표는 규정을 추가 시킬 수 있다.
- 2) 규정을 변경할 경우 동승은 대관 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서 발송일 14 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동승의 관련 규정과 상용관례에 따른다.

